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02

발의연월일: 2020. 10. 13.

발 의 자:정진석·임이자·추경호

홍문표 · 송언석 · 정희용

이종성 • 권명호 • 김정재

김선교 · 김성원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 분합하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, 보전산지를 취득 (99만 제곱미터 이내)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%를 감면하고 있는 데,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, 임산물 시장개방 확대,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, 및 임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된다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3년 1 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산업의 지속 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8조제3항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	제8조(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③
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	
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	
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	
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	
취득세를 면제하며, 임업을 주	
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	
계자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	
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(99만	
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	
하는 경우로 한정하되, 보전산	
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	
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	
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	
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	
하는 분에 한정한다)하는 경우	
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<u>2</u>	<u>2</u>
<u>020년</u>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	<u>023년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